

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

(13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위원장 정청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시01분)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간호법안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 규정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계시고요.

이 법안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우리 법사위원님들도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자세하게 디테일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테니 짧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호사 PA 제도는 어떻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PA 제도 관련해서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라고 합니다. 이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자격에 관련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대개는 3년 정도 됩니다—및 교육과정—대개는 1년 정도 됩니다—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나 한계에 대해서는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는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채혈과 같은 그런 중첩 업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PA 제도가 의사면허가 없는데 실제로 의료행위를 해서 불법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곤 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의 불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간호조무사의 학력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호법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선이 쳐지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호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여서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그런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그리고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조정한 이후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남겨 놨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한 법안이지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대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임,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진료의 보조, 진료지원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으로 제외하되 그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제2항에서도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4조제2항에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강선우 위원님!

가셨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체계·자구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강선우 위원님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제14조제3항에서도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14조 제2항에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관님 나와 계신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당초에 어제 법안소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 12조 3항하고 14조 2항에서 하위법령에 옮기려고 했던, 규정하려고 했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다르게 선택을 해 가지고 규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사용한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4조 2항을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당초 위원님들이 법 논의하실 때의 취지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14조 3항이라고 써 있는 건 지금 오기가 난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오타지요, 오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14조 2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동찬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조문을 보시면요, 12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이게 진료지원업무를 말합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3항에 규정돼 있고요. 아래 아래에 있는 제14조제2항에 보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등 기타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지금 3항에 보면 1항 2호 및 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법 몇 조라고 해 가지고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구체적 한계와 범위는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이고, 14조 2항 부분은 그 외의 부분으로 정리되는 것이지 이것을 중복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럴 수 있어서 제가 검토보고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선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 파악 좀 빨리 해 보세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위원장 정청래** 해 보시고 보건복지위에서 이것을 의결할 때 어떻게 얘기돼서 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시고요.

토론은 쟁점이 없고 이 부분, 체계·자구 부분이 있으니까요 3분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요.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제가 장관이랑 정리를 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장관님, 지금 12조는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조항이고요, 14조는 전문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라서 규정 내용 자체가 좀 다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따르면 동일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항 2호 및 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1항 2호 및 2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주어와 술어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진료지원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위원님처럼 전문가가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14조 2항도 진료지원업무를 포괄해 가지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조 2항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요.

○위원장 정청래 우선 일견 보이게……

○유상범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세요.

○유상범 위원 말씀대로 동일한 문구가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같이 언급될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 지적은 일용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법령 규정의 형식을 보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우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용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범위와 한계’라는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기준, 내용’ 이렇게 한다면 또한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치셨지요?

○유상범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그렇다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대로 손 안 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굳이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강선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제가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내용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12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야당안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여당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2조 제3항 이것을 야당안을 받고 제14조 2항 여당안을 받음으로써 이게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온 조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임하는 법령 체계가 좀 다른 겁니다.

내용상 말씀을 드리자면, 제12조 3항 같은 경우에 이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간호사의 업무 전체에서 의료기사 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빼고 난 그 내용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집합이 간호사 업무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빼내는 것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 것이라고요.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업무 전체가 아닙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와 한계라는 이 단어가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모수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2조에서 말하는 것도 12조의 1항 2호와 3호는, 특히 2호는 보조업무입니다. 진료보조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3항에서 정하는 것은 진료보조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인데, 14조 2항도 결국은 진료지원업무, 이 진료지원업무도 진료보조업무하고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돼서, 12조에서는 대령으로, 14조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서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14조 2항의 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대통령령에서, 정부에서 14조 2항 사항을 부령으로 얼마나 내릴지를 거기 가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조금 제가 궁금한 게요 여기 12조 3항 안에 보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데 이 제외되는 업무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조배숙 위원 그리고 12조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제외되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이것 이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같고, 문맥상으로는요. 그다음에 14조 2항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간호사가 진료 지원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외되는 의료기사에 관한 그런 업무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밑에는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위임되는 법률에 하나는 대통령령이고 하나는 규칙이고 급수가 좀 달라지는데, 문맥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2조 3항에 제외되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뭐뭐다, 의료기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사라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장관님, 위원님들 토론을 돋기 위해서.

저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위에서 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14조 2항은 그다음 밑에 것은 PA제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칠 경우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잠깐만 더 나와 보세요.

지금 제 얘기가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예외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는 것은 PA제도에 대한 예외나 아니면 보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것 2개를 합치면 나중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야 간에 절충·타협 하는 과정 속에서 2개를 다 넣자 이렇게 아마 보건복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과는 조금 다른 거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위원님, 그 취지가 맞지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 업무에 많이 혼란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복지위에서 의결된 것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김용민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런 의미라니까.

○김용민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문법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정비하는데 이 내용은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진통 끝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저도 이건태 위원님 의견인데요.

12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업무가 12조 2항 업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4조 1항을 보면 처음에 ‘12조 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라고 해 놨어요. 동일한 거라고 앞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 2항에다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등은 보건부령으로’ 이렇게 해 놔서…… 앞에를 ‘12조 2항의 진료지원업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동일한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것을 12조 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14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보다 좀 더 뭔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12조 3항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 버려서 이것은 혼선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위원 의견처럼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기준과 내용, 그렇게 고치거나 해서 어쨌건 동일한 단어가 12조에도 있고 14조에도 있는 혼선은 법기술적으로는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검토보고에 보면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반복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진료지원업무의 기준과 내용’ 이렇게 고치면 이것은 자구 수정이거든요, 내용을 손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위 간사님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동어반복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14조 2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기준과 내용으로 이렇게……

○**유상범 위원** ‘구체적인’은 살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장경태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 정청래** 지금 오래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용민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 의견을 들으시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저도 결론적으로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준과 내용’이나 ‘범위와 한계’가 실제 해석상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적용상에.

장관님, 그래서 오히려 저는 14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12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4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충돌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 더 세부적인 것을 부령으로 내리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하는 방식이 합당해 보이는데 그것은 입장이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12조 3항 같은 경우는 의료기사들하고 간호사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고……

○**김용민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채혈의 경우를 그 대표적인 예로 했었고. 그다음에 14조 2항

은 간호사하고 숙련간호사가 또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를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놔두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지원업무의 기준과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 취지에 맞는 법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장관님, 14조 2항에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강선우 위원님,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14조 2항을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저도 의견 짧게 있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간호법 관심 있게 봐 와서……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간사님 말씀은 12조는 간호사 전체 범위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4조는 PA 간호사들, 그러니까 전문간호사의 업무, 13조가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인데.

문제는 12조 2항에도 전문 의사의 지휘를 받아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일반 간호사를 해 놨는데 14조에도 진료지원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게 법을 14조에 정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래서……

○장경태 위원 그래서 차라리 전문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이라든지 좀 차이를, 일반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체계상?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게 12조 일반간호사의 업무 영역에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놨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지원에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놨고 그래서 어찌 됐건 체계상 아마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게 문장 하나하나를 해당 직역과 또 저희가 밤새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합의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도 간호사협회하고도 또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주시면……

○유상범 위원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하면 그렇게 하더니 내용 가지고 무슨……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 듣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고 또 많은 군중 집회에 가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또 간호사라 이 법안이 범상치 않은 법안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료업계, 특히 의사협회 쪽에서는 많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간호조무사님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법안은, 오죽했으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역 간 갈등 우려가 크다 해서 제의 요구가 돼서 폐기됐던 법안인데 최근에 의료계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히 국민들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니만큼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의료사태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보완하고 해서 각 업역 간의 서로 불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기준과 내용'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보건복지위 강선우 간사도 오케이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기준, 내용' 이 자구로 수정을 한 것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준, 내용' 이렇게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기준, 내용'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박준태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강선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